

COVID-19 팬데믹 동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뉴욕시 자원

뉴욕시는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은 뉴욕시민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민 자격 및 비용 지불 능력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시민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정보는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보시려면 nyc.gov/immigrants/coronavirus 및 nyc.gov/coronavirus를 방문하고, 트위터에서 [@NYCImmigrants](https://twitter.com/NYCImmigrants)를 팔로우하십시오.



COVID-19 지침 및 치료

- 최대한 외출을 자제할 때 뉴욕시 내 COVID-19의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뉴욕시민은 공공 장소에서,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얼굴 가리개는 입과 코를 덮는 밀착이 잘되는 종이나 천으로 된 것으로 외출할 때에는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얼굴 가리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YC.gov/Coronavirus](https://nyc.gov/coronavirus)에서 확인하십시오.
- 뉴욕시의 모든 필수 근무자는 근무 중에 일반인을 상대할 때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시의 필수 근무자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 식료품 상점에서는 직원과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체 소유주는 이러한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몸이 아프면 집에 계십시오. 기침, 호흡 곤란,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고 3~4일 내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치의를 방문하지 말고 전화, 문자, 원격 진료(화상 회의), 환자 포털 등을 이용해 주치의와 연락하십시오. 귀하와 주치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의사를 찾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311**에 연락하십시오. 시는 이민 자격 및 비용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뉴욕시에서는 환자와 직접 COVID-19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화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필요한 검사 여부를 포함한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정보는 주치의와만 상의하십시오.
-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뉴욕시의 지침은 자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NYC.gov/Coronavirus](https://nyc.gov/coronaviru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는 20여 개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 영어로 작성된 COVID-19의 실시간 업데이트 문자를 받고자 할 경우, **692-692**로 **COVID**를 문자로 보내십시오.
 - 스페인어로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고자 할 경우, **692-692**로 **COVIDESP**를 문자로 보내십시오.
 -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작성된 실시간 정보는 트위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ifyNYC](https://twitter.com/NotifyNYC), [@NNYCSpanish](https://twitter.com/NNYCSpanish), [@NNYCChinese](https://twitter.com/NNYCChinese)를 팔로우하십시오.
- 증상이 있거나 COVID-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COVID-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였거나 현재 격리 중인 뉴욕시민은 시에 본인의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 COVID-19 Engagement Portal\(참여 포털\)](https://nyc.gov/coronavirus/engagement)을 방문하십시오.



COVID-19와 이민 관련 우려사항

- COVID-19로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라도 “공적 부조(public charge)”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그린카드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호품을 받거나 의료 서비스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린카드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그린카드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적 부조”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 다수의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조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그리고 “공적 부조” 조사에서 모든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혜택이 “공공 혜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심지어 “공적 부조” 조사 대상인 이민자들에게도 “공공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의료 서비스 및 비응급 Medicaid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 보험
 - Medicaid는 포함되어 있지만, 다음 Medicaid 혜택은 제외됩니다.
 - 응급 Medicaid
 - Medicaid 기금의 지원 대상이지만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 Medicaid 기금의 지원을 받는 학교 기반 서비스 또는 혜택
 - 21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Medicaid 혜택
 - 임신 기간 + 60일 동안 여성에게 제공되는 Medicaid 혜택
 - 여성과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푸드뱅크, 학교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테이크아웃 식사 등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은 제외, 아래의 "음식" 섹션 참조)과 같은 많은 종류의 음식 지원
 - 실업 혜택
- 이민 자격과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든 환자에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실시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병원과 의원은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허가 없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 이민 및 공공 혜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ActionNYC 무료 핫라인(**1-800-354-0365**,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하여 “Public Charge”라고 말하면,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및 건강

- NYC Health + Hospitals는 이민 자격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YC Health + Hospitals는 보험이 없고 의료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응급 의료 서비스, 의사 방문, 의약품, 장기 치료, 입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의료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NYCHealthandHospitals.org/immigrant를 방문하거나 844-NYC-4NYC (844-692-4692) 또는 311로 전화하십시오.
- NYC Care는 건강 보험 자격이 없거나 건강 보험을 들 여유가 없는 뉴욕시민에게 NYC Health + Hospitals가 제공하는 저비용 및 무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같은 가구 내 거주하지 않은 사람과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NYC Care 직원들은 연락처 정보를 알아 두었다가 대면 상담이 허용될 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NYCCare.nyc를 방문하거나 **1-646-NYC-Care(1-646-692-2273)** 또는 **311**로 전화하십시오.
- 뉴욕시에는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비용을 책정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커뮤니티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민 자격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ndaHealthCenter.HRSA.gov 또는 [NYC 저비용~무료 의료 서비스 리스트](#)에서 가까운 시설을 찾아보십시오.
-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공포를 경험하는 경우, 뉴욕시에서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는 무료 비밀 보장 헬프라인 NYC Well에 문의하여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888-NYC-WELL(888-692-9355)**에 전화하거나, **65173**으로 **WELL**이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NYC.gov/NYCWell의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 뉴욕주의 COVID-19 정서 지원 상담전화 서비스, 844-863-9314로 전화하시면,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원봉사자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며 진료의뢰를 해드립니다.

건강 보험

- 서류 미비 아동 및 임부를 포함하여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저비용 및 무료 건강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Medicaid, Childhealth Plus, Essential Plan은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보건국](#)을 방문하거나 **311**에 연락하십시오.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건강 보험 가입 서비스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전화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전화 가입 약속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민 자격과 관계 없이 많은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건강보험부\(Office of Health Insurance Services\)](#)를 방문하거나 311에 연락하여 예약하십시오. 또한 문자 [CoveredNYC](#)를 **877-877**로 보낼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문자 [SeguroNYC](#)를 **877-877**로 보내십시오.
- 커뮤니티 의료 지지자 모임(Community Health Advocates, CHA)은 뉴욕주 전체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거주자들이 복잡한 의료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HA는 건강 보험 사용법, 의료 명세서 처리, 채무 관련 문제, 보험금 지급 거부, 자격 심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을 제공합니다. 17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드립니다. 핫라인 (**888**) **614-5400**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음식

-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및 푸드 스탬프는 식량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이민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 서비스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된 온라인 포털 [ACCESS HRA](#)에서 온라인 신청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718-557-1399**로 HRA Infoline에 전화하십시오.
 - 뉴욕시의 SNAP 수혜자는 [Amazon](#), [Shoptite](#) 또는 [Walmart](#)에서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 자택 주소로 배송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 이민에 관하여 그리고 SNAP과 같은 공공 혜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ActionNYC 무료 핫라인(**1-800-354-0365**,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하여 “Public Charge”라고 말하면, 정보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열거된 서비스들은 이민 자격에 관계 없이 뉴욕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해도 “공적 부조”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 그린카드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뉴욕시 식료품 저장실에서는 식료품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키친에서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FoodHelpNYC](#)를 이용하거나 311에 전화하여 인근 시설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 뉴욕시 전역에 마련된 밀 허브(Meal Hub)에서 뉴욕시민에게 무료로 하루 세 끼가 제공됩니다. 밀 허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30~오전 11:30에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오전 11:30~오후 1:30에는 성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등록, 신분증 제시, 필요 서류 제출 등의 절차는 없습니다. 모든 성인과 어린이는 한 번에 세 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의 식사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는 밀 허브 밖에서 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에서는 채식, 코셔 및 할랄 메뉴도 제공됩니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무료 식사 제공 위치 검색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문자 **FOOD**를 **877-877**로 보내셔도 됩니다. 스페인어의 경우, 문자 **COMIDA**를 **877-877**로 보내십시오.
 - 가정 배달이 가능한지를 포함하여 음식을 받는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옵션을 찾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www.nyc.gov/getfood를 방문하거나 311에 연락하여 “Get Food”라고 말하십시오.
 - 이 서비스를 취소, 변경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311에 전화하여 “Get Food”라 말하거나 on.nyc.gov/seniorfoodhelp에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집을 나갈 수 없거나, 식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사설 배달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집으로

식사가 배달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NYC COVID-19 식량 지원 자원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311에 전화하여 "Get Food"라고 말하십시오.

- 여성, 유아, 아동(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은 저소득층 여성 및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품 및 기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ACCESS NYC](#)(스페인어의 경우, [ACCESS NYC Español](#))를 방문하거나 HRA Infoline **718-557-1399**에 전화하십시오.



주택 및 유틸리티

- 뉴욕 내 모든 퇴거 절차 및 미결 퇴거 명령은 이민 자격에 관계 없이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 일제히 중단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지불을 못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실 산하 세입자 보호국\(Mayor's Office to Protect Tenants\) 웹사이트](#) 또는 뉴욕주 법무 장관실(NYS Attorney General)의 [COVID-19](#) 과 주거권에 대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임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퇴거 위협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차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시의 주택 세입자 상담전화, 311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에서는 시의 혜택, 지원 신청, 무료 법률 상담 및 모든 뉴욕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자원을 받는 방법과 -ZIP 코드, 소득, 이민자 신분 등에 상관 없이 -COVID-19 위기 동안 임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근무 시간이 단축되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경우, 긴급 현금 지원(Emergency Cash Assistanc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민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CESS NYC](#)(스페인어의 경우, [Access NYC Español](#))를 방문하거나 HRA Infoline 718-557-1399에 전화하십시오.
- 홈베이스(Homebase) 프로그램은 주거를 상실하고 보호소 시스템에 들어갈 절박한 위기에 처한 뉴욕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RA의 홈베이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311에 연락하십시오.
-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NYC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의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 감소로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DTRAI@hpd.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수입이 감소한 거주자들은 [NYCHA 임대 생활고\(Rent Hardship\) 프로그램](#)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YCHA 고객 지원 센터(**718-707-7771**)에 문의하십시오.
- 시에서는 NYCHA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을 위한 식품 및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개인보호장구와 모든 NYCHA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COVID-19 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H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뉴욕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호텔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뉴욕시민;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의료 서비스 근로자; 퇴원하여 자가격리가 필요한 NYC Health + Hospitals 환자; 및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19hotel을 방문하십시오.
- ConEdison은 유틸리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해도 전기 공급을 차단하지 않을 것과 연체료를 면제하는 조치에 동의했습니다. National Grid 또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최소 4월 말까지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Edison 웹사이트](#)와 [National Grid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omcast](#), [AT&T](#) 및 [Verizon](#)에서는 COVID-19로 인한 중단 때문에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60일간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 Comcast는 저소득층 신규 가입자에게 2달 동안 최대 25Mbps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mcast Internet Essentials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Metro PCS](#), [T-Mobile](#), [Sprint](#), [AT&T](#) 및 [Comcast Xfinity](#)는 모두 최소 60일간 휴대폰 가입자에게 데이터 한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Verizon](#)은 소비자 및 소규모 사업체에게 공유 데이터 플랜, 핫스팟 및 제트팩에 4G LTE의 15GB를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휴대폰 회사에 연락하여 알아보십시오.
-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제 "xfinitywifi" SSID에서 누구나 모든 Xfinity WiFi 공공 핫스팟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핫스팟은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와 야외 상업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Fi 공공 핫스팟 위치와 자세한 정보는 [Xfinity WiFi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보육

- 학교가 여전히 휴교 상태이기 때문에 2019-2020 학년도의 남은 기간 동안은 원격 수업이 계속됩니다. 즉,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OE)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아이패드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셀룰러 데이터 요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chools.NYC.gov/Coronavirus](https://schools.nyc.gov/Coronavirus)를 방문하거나 311에 문의하십시오.
- K-12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Charter Spectrum**은 신규 고객들에게 처음 2달간 무료로 최대 100Mbps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치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1-844-488-8395로 연락하십시오.
 - Altice USA가 소유한 **Suddenlink 및 Optimum**에서는 신규 고객에게 최대 30Mbps의 인터넷을 60일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Optimum은 1-866-200-9522로 전화하고, Suddenlink 인터넷 서비스는 1-888-633-0030으로 전화하십시오.
 - Cox는 2020년 5월 12일까지 인터넷 프로그램 **Connect2Compete**를 K-12 이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 DOE에는 Pre-K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영어 **가정 학습 자원**이 있습니다.
- NYC의 아동보호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ACS)은 부모 역할 정보, 격리 기간 동안의 권장 활동 및 기본적 요구를 위한 자원을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를 위한 **가상의 COVID-19 자원 안내**를 제공합니다.
- ACS는 지역사회 세 곳에서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족 지원 센터(Family Enrichment Centers, FEC)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FEC는 현재 원격 위탁과 지원과 부족한 개인 응급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C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뉴욕 공립 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NYPL)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교습**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강사로부터 온라인 숙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필수 과목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동영상과 기타 자료들은 24시간 내내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욕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며, **뉴욕 공립 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웹사이트**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e Speak NYC에서는 온라인 교육용 영어 자료와 주간 온라인 수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민자 신분 관계 없이 **지금 바로 수강을 신청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모든 뉴욕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뉴욕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영어 말하기 연습도 해보십시오. 수업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수업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We Speak NYC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업 계획안, 핸드북 등 교사를 위한 자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시는 초등 대응요원, 의료 서비스 종사자, 대중 교통 종사자 및 기타 시 직원뿐만 아니라 필수 근로자를 위하여 지역지원센터(Regional Enrichment Centers, REC)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C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30부터 오후 6:30까지 유치원생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게 개방됩니다. 식사가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무료 보육 서비스 대상 종사자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DOE의 **지역지원센터(Regional Enrichment Center)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311에 연락하십시오.



근로자 지원 및 재정 지원

- 사업주이든 구직자이든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서비스부(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가 뉴욕시민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COVID-19에 관한 최근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면 nyc.gov/sbs를 방문하십시오.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 보안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경제적 영향 기금(Economic Impact Payments)을 일정 금액 미만 수입의 다수 미국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영향 기금(Economic Impact Payme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
 - 다른 사람의 소득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는 사람
 - 취업이 가능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가진 사람(유효한 SSN)
 - 조정 후 총소득이 1인 \$99,000, 합산 \$198,000 미만인 사람

- 가족의 경우, 부모가 모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도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 과세 연도 중 어떤 시점에든 한 쪽 배우자가 미국 군인인 경우, 배우자 한 명만 유효한 SSN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ACCESS NYC](#)를 방문하십시오.
-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숙지하시고 근로자는 뉴욕시 법률에 따라 이민자 신분과 관계 없이 유급 병가 등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근로자 권리 장전](#)은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여러분은 뉴욕주 법률에 따라 COVID-19로 인한 긴급 유급 병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 역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주지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뉴욕주 COVID-19 핫라인 1-888-364-3065에 문의하십시오.
- 취업 허가증이 있는 뉴욕시민은 실업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7일의 보험금 지급 대기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88-209-8124에 연락하십시오. 자격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YC 실업급여 FAQ](#)를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 뉴욕 거주 이민자 및 그 자녀는 뉴욕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ACCESS NYC](#)(스페인어의 경우, [Access NYC Español](#))를 방문하거나 HRA Infoline 718-557-1399에 전화하십시오.
- 주택 담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주택 담보 상환 면제 지침](#)에 따라 은행이 90일까지 대출금 납부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황은 이자나 연체료 없이 자동으로 유예됩니다.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소관이 아닌 오래된 연방 가족 교육 대출과 학교 소관의 Perkins Loans 및 사적인 학자금 대출과 같은 일부 학자금 대출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의 [COVID-19 동안의 학자금 부채 도움말](#)에서 자세히 알아보거나 [studentaid.gov](#)를 방문하십시오.
- 뉴욕주에 상환 만기가 지난 학자금 대출 또는 의료비 대출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채권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 법무 장관실\(New York Attorney General\)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의료 서비스 종사자, 대중 교통 종사자 및 응급 의료 요원은 직장 회원 가입을 통해 30일 무료 Citi Bike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ti Bike 필수 인력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공공 안전 및 괴롭힘 또는 차별로부터 보호

- 개인의 인종, 출신국가, 기타 지위에 근거하여 증오 또는 차별하는 행위는 뉴욕시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뉴욕시장실 산하 증오 범죄 방지실(Mayor's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Hate Crimes) 및 NYPD에서는 COVID-19와 관련된 공포와 선입견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증오 및 편견을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괴롭힘 또는 차별을 신고하려면 **311**에 연락하십시오.
 -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또는 증오 범죄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911**에 신고하십시오. NYPD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민 자격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다.
 - COVID-19와 관련하여 증오와 편견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과 피해자 및 정신건강 지원을 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nyc.gov/StopCOVIDHate](#)에서 알아보십시오.
- [뉴욕시 가족분쟁해결센터\(NYC Family Justice Centers\)](#)는 전화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즉각적인 안전 계획, 대피소 지원, 법률 지원,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기타 필수 자원을 제공합니다.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회신을 드릴 것입니다.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가까운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뉴욕시 가족분쟁해결센터 **Bronx, 718-508-1220**
 - 뉴욕시 가족분쟁해결센터 **Brooklyn, 718-250-5113**
 - 뉴욕시 가족분쟁해결센터 **Manhattan, 212-602-2800**
 - 뉴욕시 가족분쟁해결센터 **Queens, 718-575-4545**
 - 뉴욕시 가족분쟁해결센터 **Staten Island, 718-697-4300**
 - 저녁 또는 주말에는 뉴욕시 24시간 가정 폭력 핫라인 **800-621-HOPE (4673)**에 연락하십시오.



이민자 자격 절차 및 집행

- ActionNYC는 뉴욕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이민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뉴욕시의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같은 가구 내 거주하지 않은 사람과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운영 시간을 변경하여 전화를 이용한 이민 심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1-800-354-0365 또는 311에 전화하여 “ActionNYC”라고 말하십시오.
- 뉴욕시 법무부(NYC Office of Civil Justice)에서는 임차인, 이민자, 저임금 근로자, 기타 뉴욕시민이 경험하는 민사 관련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이민 법원의 심리는 수감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2020년 5월 15일까지 연기됩니다. 수감된 사람의 경우, 심리는 당분간 진행됩니다. [Justice.gov/EOIR](#)를 방문하거나 출입국심사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핫라인 **1-800-898-7180**에 전화하고 [EOIR 페이스북 페이지를 확인하여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십시오.](#)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추가 고지가 있을 때까지 면접을 포함한 대면 업무 및 귀화식을 취소했습니다. [USCIS.gov/Coronavirus](#)(스페인어의 경우는 [Respuesta de USCIS al Coronavirus 2019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USCIS 핫라인 **1-800-375-5283**에 전화하십시오.
-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COVID-19 팬데믹 대응에 관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CE.gov/COVID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CE 시설에 수감된 인원의 가족 및 친지의 면회는 현재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법률 상담을 위한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CE에서는 영상 통화를 이용한 상담을 권장하고 있으며, 면회를 위해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는 개인 보호 장비를 준비하여 착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시설에서 진행되는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업데이트는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에 문의해야 합니다.
 - ICE는 수감되지 않은 인원의 모든 대면 체크인을 취소했습니다. 전화를 통한 체크인은 계속 진행됩니다.
 - ICE의 체포 활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ICE는 체포 대상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시설 또는 그 근처에서 체포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자료

- 이민 또는 뉴욕시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MOIA 핫라인 212-788-7654에 전화하거나 AskMOIA@cityhall.ny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MOIA 주민 업무 담당자(MOIA Neighborhood Organizer)에게 문의하십시오.
- 신체 장애를 가진 뉴욕시민의 경우, [시장실 산하 장애인실\(Mayor's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웹사이트](#)의 COVID-19 페이지에서 식료품/물자 배송, 사회보장/Medicaid 혜택, 가정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구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844-330-2020](#)으로 전화를 걸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정보는 [2020 인구조사 언어 지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인구조사는 안전하며,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시민권 보유 여부나 이민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